



제 422국회 (임시회)
제 1 차 정무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터넷 도박을 이용한 사기행위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097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김소회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12. 30.

다. 회 부 일 : 2024. 12.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 행위인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외에도 전기통신을 이용한 다양한 방식의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통한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성인은 물론 청소년 사이에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불법 인터넷 도박의 경우 시스템 조작을 통하여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지 않고 참여자가 재산상 이익을 득할 확률을 0으로 만들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사기행태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부재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도박자금 출금에 사용되는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터넷 도박을 이용한 사기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여 인터넷 도박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지도록 함으

로써 인터넷 도박의 확산과 그로 인한 피해를 막고, 범죄자의 막대한 수익 인출을 막아 범행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인터넷 도박을 이용한 사기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여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한 행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의 행위.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1)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2)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3)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4)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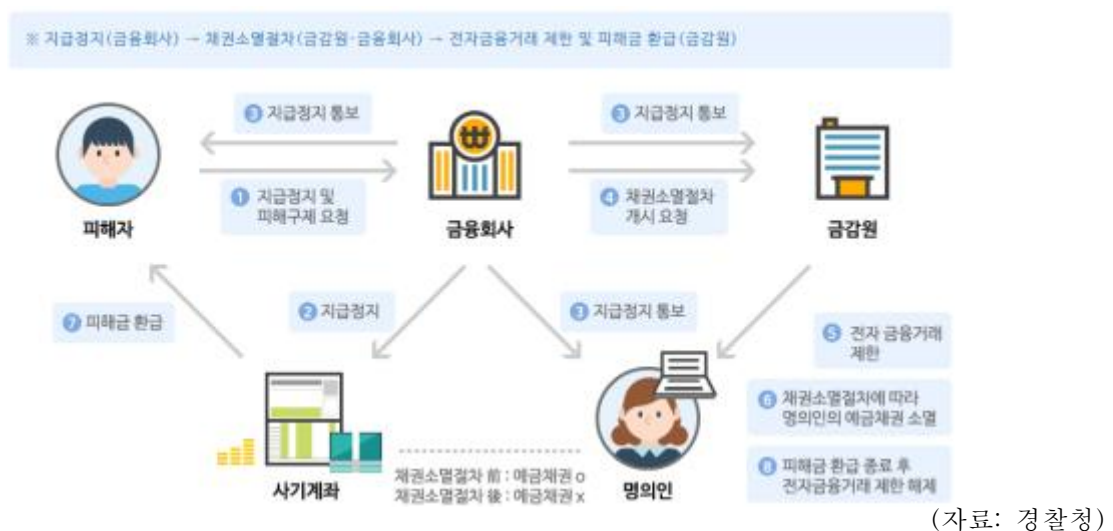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2의2. ~ 7. (생략)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① 제2조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은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2조 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u>록 하는 행위</u> <u>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행위를 가장하여 타인을 기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u> 2의2. ~ 7. (현행과 같음)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① 제2조제2호가목1)·2)----- ----- ----- ----- ----- ----- ----- -----. ② ----- -----제2조제2호가목3)·4)-----<u>나목에</u>----- ----- -----. ③ ~ ⑤ (현행과 같음)

□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함)」은 자금의 송금·이체를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발생한 경우, ① 사기이용계좌를 지

급정지하여 피해를 방지하고 ② 채권소멸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신속히 피해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피해자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사기범 계좌)로 자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먼저 피해자의 지급정지요청·피해구제신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즉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자금의 송금·이체·출금 중단)를 하여 피해를 방지함.
- 이후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 소멸절차 개시공고를 요청하면, 금융감독원이 개시를 공고하고 2개월간 이의제기가 없으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이 소멸되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환급하게 됨.

[그림 1]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



[표 1]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

절차	내용	근거조항
①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요청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자금을 이체한 계좌(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입출금·이체 금지)요청 및 피해구제 신청	§3①
② 지급정지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입출금·이체 금지) 실시 ※ 수사기관·금융감독원의 정보제공 또는 금융회사의 자체점검 등을 근거로 지급정지도 가능	§4①
③ 지급정지 통보	금융회사가 금감원, 명의인, 피해자 등에게 지급정지 사실을 통보	§4②
④ 채권소멸절차 개시 요청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소멸하기 위한 절차 개시 공고 요청	§5①
⑤ 전자금융거래 제한	금감원이 ③에 따라 통보받은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	§13의2
⑥ 채권소멸절차	④의 요청에 따라, 금감원이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공고	§5②
	(이의제기 등 없을시) 2개월 후 예금채권 소멸	§9①
⑦ 피해금 환급	채권소멸 후 금감원이 14일 내 피해환급금을 산정하여 피해금 환급 결정 → 금융회사를 통해 피해금 환급	§10①
⑧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	피해금 환급 지급이 종료된 경우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	§8

(자료: 관계부처합동,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2020. 6., 18쪽 재구성)

- 또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병과가능), 그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하며, 상습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범한 자는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불법 인터넷 도박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여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범행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불법도박의 추정 매출규모는 2022년 102.7조원으로, 전자기기와 온라인 도박 시장의 성장으로 2019년 81.5조원에 비해 약 26%로 증가하였음.

[표 2] 연도별 불법도박 매출규모 추정액

(단위: 억원)

연도	2008 (운영자)	2012 (운영자)	2016		2019 (이용자)	2022 (이용자)
			운영자	이용자		
온라인	320,000	170,985	250,355	196,180	241,611	375,059
오프라인	217,028	580,489	587,467	512,754	573,863	652,177
합계	537,028	751,474	837,822	708,934	815,474	1,027,236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 한편 최근 5년간 경찰의 도박 모니터링 건수 중 ‘온라인 도박’ 모니터링 건수가 압도적인 비중(99%)을 차지하고 있음.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도박의 장소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더 가속화된 것으로 추정됨.¹⁾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조사기간: 2021. 9.~2022. 8.)

[표 3] 경찰의 불법도박 모니터링 추이

(단위: 건)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온라인 도박	25,521	16,476	20,928	18,942	26,957	108,824(99%)
현장 도박	166	186	217	205	273	1,047(1%)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 도박 등 사행행위는 개인에게 우울증, 불안증세 등의 정신적 건강문제를 유발하고, 재정적 손실과 사회적 고립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관련 범죄의 증가, 가족 붕괴, 사회적 불안정 증가 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며, 불법사행행위는 도박 중독 유병률이 더 높고, 도박비용 마련 등의 이유로 신용 불량 경험, 재산 및 폭력 범죄 등의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합법사행행위에 비해 높음.²⁾

- 특히 불법온라인사행행위는 접근 및 이용의 용이성, 익명성, 온라인을 통한 유인 전략, 사회적 고립 유발 등의 특성으로 인해 도박중독 등의 문제를 더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남.³⁾

□ 이에 개정안은 인터넷 도박을 이용한 사기행위의 경우에도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포함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인터넷 도박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을 통해 이러한 범죄 행위를 근절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2) 한국행정연구원(2017.7.), 『불법사행산업 근절 종합대책방안 마련 연구』, 21쪽

3) 백지연·정유숙·오윤혜, 「노출 경로에 따른 청소년 도박 주요 증상」, 정신의학 연구 (Psychiatry Investigation), 2021년

- 다만,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도박 이용자의 범죄 성립 가능성에 따른 환급의 적절성, 실효적인 집행 가능성, 유사 법률안의 심사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달리 인터넷 도박 이용자는 경우에 따라 형법 등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해 피해금 환급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하고 채권 소멸절차를 통해 피해금을 환급하는 제도로 구성되어 있음.⁴⁾

-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수익 인출을 신속하게 막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기존 민사소송 등을 활용하지 않고도 피해금을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음.

- 개정안과 같이 이 법의 적용 대상에 인터넷 도박을 이용한 사기행위를 포함할 경우 범죄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통해 범죄 수익을 신속하게 동결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나, 인터넷 도박 이용자에게 피해금을 환급하는 절차도 함께 적용되게 됨.

- 금융위원회는 「형법」에서 도박을 한 사람의 경우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4) 6p 표 1 참조

므로, 인터넷 도박 사기행위의 피해자도 경우에 따라 형법에 따른 도박죄에 해당될 수 있어 이를 전면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다만, 대법원은 이른바 ‘사기도박’과 같이 도박 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⁵⁾하여, 인터넷 도박 사기 피해자는 도박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음.

- 따라서, 인터넷 도박 사기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을 보이스피싱과 유사하게 환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의견과 관련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둘째,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도박 사기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대해 직접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인터넷 도박 사기행위 여부를 실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판결요지 중

“도박이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도(賭)하여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사기도박과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수사권한이 없는 금융회사가 송금·이체 사실 외에 인터넷 도박 여부 등을 판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마지막으로, 개정안과 같이 인터넷 도박 사기행위뿐만 아니라 불법온라인사행행위 전반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방지 책임을 규정하는 「불법온라인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897),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6186)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이들 법률안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⁶⁾.

문 의 처
02)6788-5108

6) 각 법률안에서는 개정안과 유사하게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